

##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 12. 9.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11월 25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3년 12월 1일
- 다. 상정일자 : 제100회 제2차정례회 제5차위원회 (2003. 12. 9)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세무2과장 염 세동

#### 가. 제안이유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구세의 일부 감면대상을 폐지 또는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그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문화재보호법과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종전에는 주거용 부동산에 한하여 면제하였음)

- 현행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면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일부 감면율을 적용도록 함.(안 제9조)

- 건축 후 미분양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 것을 3년간만 적용토록 조정함.(안 제20조)
- 2002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종료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감면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5조)
- 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한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안 부칙 제2조)

### 3. 전문위원 겸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2003. 10. 17일 서울시장으로부터 행정자치부의 구세감면조례표준안이 이첩 시달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음하여 전문개정형식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의 적용시한은 2003.12.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2006.12.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

- 안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문화재보호법과 서울특별시 문화재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중 주거용 건물과 주거용 부동산에 한해서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으나 동 개정안에서는 용도에 관계없이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제1호에서는 현행 전용면적 40㎡ 이하의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면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안 제20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현행규정에는 5년간만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개정안에서는 적용 기간을 3년간으로 축소하였으며, 현행조례 제25조에 규정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감면규정은 2002.12.31일로 그 적용시한이 종료되었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동 개정조례안은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장으로부터 행정자치부장관의 표준안이 이첩 시달됨에 따라 2003. 12. 31로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동 조례를 2006. 12. 31까지 3년간 연장하고 상위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인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정형기 위원) :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안이 3년간 연장이 되면 우리 구청의 이득은 어느 정도 인가?
- 답변요지(염세동 세무2과장) : 현재 구에서 부과하고 있는 사항은 없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8. 기타사항 : 없 음

[제100회 제2차 정례회] {2003. 12. 2(화) ~ 12. 18(목)}

# 委員會 審查 參考資料集

〈안건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감면 조례개정조례(안)

▶ 기획재정국 세무2과 소관

日時 : 2003. 12. 9(화) 10:00

(제5차 위원회)

行政建設委員會

専門委員 박 관 수

## [검토보고]

##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0 동 개정조례안은 2003. 10. 17일 서울시장으로부터 행정자치부의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이첩 시달됨에 따라 자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음하여 전문개정형식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구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의 적용시한은 2003.12.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2006.12.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lt;주요 개정 내용&gt;

0 안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문화재보호법과 서울특별시문화재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중 주거용 건물과 주거용 부동산에 한해서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으나 동 개정안에서는 용도에 관계없이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제1호에서는 현행 전용면적 40㎡ 이하의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면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0 안 제20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현행규정에는 5년간만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개정안에서는 적용기간을 3년간으로 축소하였으며, 현행조례 제25조에 규정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감면규정은 2002.12.31일로 그 적용시한이 종료되었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0 동 개정조례안은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장으로부터 행정자치부장관의 표준안이 이첩 시달됨에 따라 2003. 12. 31로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동 조례를 2006. 12. 31까지 3년간 연장하고 상위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인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마포구세감면조례 전문개정 관련』

#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사유



마      포      구

현 행	개	
<p>제4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 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 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 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4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 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 인복지시설을 ----- ----- ----- -----.</p>	<p>○ 상위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법규의 조문정비</p>
<p>제5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 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 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 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 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생략)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7. (생략)</p>	<p>제5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 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 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 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생략)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7. (생략)</p>	<p>○ 상위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법규의 조문정비</p>

현 행	개 풍 약	기 경 차 유
<p>제7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00특별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li> <li>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li> <li>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li> </ol>	<p>제7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p> <p>1. -----</p> <p>-----</p> <p>-----</p> <p><u>부동산</u></p> <p>2. ----- <u>건축물</u></p> <p>-----</p> <p>-----</p> <p>----- <u>부동산</u></p> <p>3. -----</p> <p>-----</p> <p>-----</p>	<p>○ 문화재보호법과 서울특별시문화재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도록 함</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9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p>	<p>제9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p> <p>-----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p>	<p>○상위 법령의 제·개정으로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법규의 명칭변경 및 조문정비</p>

현 행	개 토 외	재 경 사 유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 <u>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u>	○ 현행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도록 함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3.	

현 행 법	개정법률	제정일
<p>제13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u>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 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제13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u>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u></p>	<p>○상위 법령의 제·개정으로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법규의 명칭변경</p>

현 행 법	제 19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제 19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p>1. <u>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u>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p> <p>2. <u>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u>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p> <p>※ 15년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감면기간과 감면율 조정 가능</p>	<p>제 19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 제5항 단서의 100분의 50을</p> <p>1. <u>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제1호 · 제2호 본문의 규정에</u></p> <p>2. <u>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 제2호 · 제3호 본문의 규정에</u></p> <p>※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제5항은 15년의 범위안에서, 동조제12항은 10년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별로 감면기간과 감면율 조정 가능</p>	<p>○ 상위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법규의 조문정비</p>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p><b>제24조(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b>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내에서 <u>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u>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다만, 기존의 공장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li> <li>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li> </ol>	<p><b>제24조(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b> -----</p> <p><u>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u></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 상위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법규의 명칭변경</p> <p>1. -----</p> <p>-----</p> <p>-----</p> <p>2. -----</p> <p>-----</p> <p>-----</p>

현	제	개
<p>제25조(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 등관리조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사업이 완료·통보된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년도 재산세와 당해 건축물 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대한 당해년도 사업소세를 각각 50% 경감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 5년 이내에 재정비대상이 되어 통보된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징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비가 완료·통보된 이후에 감면하되, 정비완료 당해 연도에 이미 납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는 경감세액을 환부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당해 연도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경감세액은 각각 납세의무자별로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lt; 삭제 &gt;</p>	<p>○2002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종료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감면 규정을 삭제함</p>

##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관련 법령

### 地 方 稅 法

#### 第7條 (公益等 事由로 因한 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

- ① 地方自治團體는 公益上 其他の 事由로 因하여 課稅를 不適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課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地方自治團體는 公益上 其他の 事由로 因하여 必要한 때에는 不均一課稅를 할 수 있다.

#### 第8條 (受益等 事由로 因한 不均一課稅 및 一部課稅)

地方自治團體는 그의 一部에 對하여 特히 利益이 있다고 認定되는 事件에 對하여서는 不均一課稅를 하거나 또는 그의 一部에 對하여서만 課稅할 수 있다.

#### 第9條 (課稅免除等을 爲한 條例)

第7條 및 第8條의 規定에 依하여 地方自治團體가 課稅免除·不均一課稅 또는 一部課稅를 하고자 할 때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하여야 한다. <改正 78·12·6, 98·12·31>

## **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안 참고법령**

### **문화재보호법**

**第4條 (寶物 · 國寶의 指定)** ①文化財廳長은 文化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有形文化財중 중요한 것을 寶物로 指定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②文化財廳長은 第1項의 寶物에 해당하는 文化財中 人類文化의 見地에서 그 價值가 크고 類例가 드문 것을 文化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國寶로 指定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第6條 (史蹟 · 名勝 · 天然記念物의 指定)** 文化財廳長은 文化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記念物중 중요한 것을 史蹟 · 名勝 또는 天然記念物로 指定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第7條 (重要民俗資料의 指定)** 文化財廳長은 文化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民俗資料중 중요한 것을 重要民俗資料로 指定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第8條 (保護物 또는 保護區域의 指定)** ①文化財廳長은 第4條 · 第6條 또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指定에 있어서 文化財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保護物 또는 保護區域을 指定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0.1.12>

②文化財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物 또는 保護區域을 지정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檢討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검토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文化觀光部令으로 정한다. <신설 2000.1.12>

### **주택법**

**제10조 (공동사업주체)** ③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등)** ①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1998.11.13, 2002.9.11, 2003.6.25>

1.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전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제5항은 15년의 범위안에서, 동조제12항은 10년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별로 감면기간과 감면율 조정 가능

### **서울특별시국외광고물통관리조례**

**제32조(광고물등의 특별정비 및 제정지원 등)** ①시장은 도시경관의 향상,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 해의 방지 또는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특별정비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2조 (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제1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지역중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2.5.30, 1997.2.6, 1999.2.26, 2000.7.1, 2002.12.26>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3. 폭 30미터이상의 도로변
4. 기타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제32조 (표시방법의 완화) ① 시·도지사는 광고물등의 표시가 미관풍치 및 건강하고 체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지역중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안에서는 제13조 내지 제30조·제30조의2 및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 중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 광고물등에 한한다. <개정 1992.5.30, 2001.11.22, 2002.12.26>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3. 폭 30미터이상의 도로변
4.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제10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역 등을 제외한다)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 **노인복지법**

第31條 (老人福祉施設의 종류) 老人福祉施設의 종류는 다음 각號와 같다.

1. 老人住居福祉施設
2. 老人醫療福祉施設
3. 老人餘暇福祉施設
4. 在家老人福祉施設